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616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이병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윤희

피고A

변론 종결2022. 8. 16.

판결 선고2022. 10. 18.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2020. 3. 30. 접수 제3851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20. 3. 2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그런데 2020. 10. 28.경 보증사고(사업장 권리침해1))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1. 5. 27. 458,247,1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이후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21. 6. 22. "B은 원고에게 466,203,282원 및 그 중 458,247,11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21. 7. 13.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1차전9845).

나. B의 처분행위

그런데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30. 아들인 피고에게 2020. 3. 27.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아래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1	대구 달서구 H 도로 41㎡	21,238,000
2	대구 달서구 I 임야 1㎡ 중 1/3 지분	245,000
3	경산시 J 전 693㎡ 중 1/3 지분	339,000,000) 다만, 당해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4	경산시 K 전 25㎡ 중 1/3 지분	
5	경산시 L 전 562㎡ 중 1/3 지분	
6	경산시 M 답	

1	대구 달서구 H 도로 41m ²	21,238,000
	628㎡ 중 1/3 지분	
7	경산시 N 묘지 307㎡ 중 1/3 지분	
8	경산시 ○ 답 539㎡ 중 1/3 지분	
9	경산시 P 전 1174㎡ 중 1/3 지분	
10	경산시 Q 전 76㎡ 중 1/3 지분	
11	경산시 R 답 230㎡ 중 1/3 지분	
12	경산시 S 전 114㎡ 중 1/3 지분	
13	경산시 T 전 27㎡ 중 1/3 지분	
14	경산시 U 전 14㎡ 중 1/3 지분	
15	대구 달서구 V 아파트 W 호	603,000,0003) 다만,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6억 1,12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합계	963,483,000	

1	원고	구상금	450,000,000
2	X 주식회사	구상금	420,000,000
3	대구광역시	지방소득세	20,591,130
4	북대구세무서	양도소득세	103,163,750
5	Y	약정금(투자금 반환)	150,000,000
합계	1,143,754,8804) 이는 앞서 본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9호증의 2, 제11호증, 제13호증의 2, 3, 제14호증의 3,

제15호증의 2 내지 13, 제17호증의 1 내지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Z이 2019. 5. 16. 가압류결정을 받은 점(청구금액 11억 300만 원),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2019. 9.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한 점, ③ 결국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관하여 2020. 8. 26.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④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B은 2020. 3.경 이 사건 증여를 하고, 2020. 7.경에는 자신의 적극재산을 대부분 처분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결국 원고가 2021. 5. 27.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증여에 의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그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피고가 2019. 9.경부터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B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받은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임금 채무자는 B이 아니라 소외 회사이므로 B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소극재산의 감소 없이 적극재산의 감소만을 초래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참조)].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B의 아들이고, 이 사건 증여 당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B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현경

별지

- 1)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외 회사 및 B은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사업장(대구 남구 D 외 2필지 E 건물 F호)에 관하여 2020. 8. 26.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대구지방법원 G).
- 2) 다만, 당해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 3) 다만,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6억 1,12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는 앞서 본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